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08호 2018. 3. 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142호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52호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3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3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6
- 삼척시 고시 제31호 문어포획 제한 고시 ----- 9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9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198호 2018년도 삼척시 지방재정공시(예산) ----- 1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19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2. 1.)에서 의결된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2018년 3월 2일

삼척시 조례 제 1142호 (의원 발의)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2018년 제3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2. 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3월 16일

삼척시 규칙 제552호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속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의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6조의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신체건강 상 당직근무 수행에 고충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 직 근 무 자 편 성

구 분 기관명	일 직	숙 직
본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사령(과장급) 1명 ○ 당직보좌관(계장급) 1명 ○ 당직원 4명 (재난상황실/별관/운전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사령(계장급) 1명 ○ 당직원 5명 (재난상황실/별관/운전원 포함)

삼척시 고시 제2018 - 3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3. 0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96 외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3. 0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143-1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96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양안길 63-13 (남양동)	폐지	20180302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지역 위치복합활용	
3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89-5	강원도 삼척시 마달1길 108 (마달동)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마달길분기)	
4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89-4	강원도 삼척시 마달길 125 (마달동)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188-2, 18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57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문화재(준경묘)명칭활용	
6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145, 산142, 산143-1, 208, 208-1, 209-1, 209-4, 209-5, 209-6, 210-1, 210-4, 210-5, 210-6, 210-7, 210-8, 234-5, 234-6, 234-7, 234-10, 729-9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72 (교동)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교동하실골)활용(기존도로명)	
7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76 (교동)	폐지	20180302	건물철거	20090626	지역지명(교동하실골)활용(기존도로명)	
8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90 (교동)	폐지	20180302	건물철거	20090626	지역지명(교동하실골)활용(기존도로명)	
9		이	하	역	백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개	8 건	8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143-1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96	20180302	20180302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양안길 63-13 (남양동)	폐지	20180302	20180302	20180302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지역 위치복합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89-5	강원도 삼척시 마달1길 108 (마달동)	20180302	20180302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마달길분기)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89-4	강원도 삼척시 마달길 125 (마달동)	20180302	20180302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188-2, 18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57	20180302	20180302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문화재(준경묘)명칭활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145, 산142, 산143-1, 208, 208-1, 209-1, 209-4, 209-5, 209-6, 210-1, 210-4, 210-5, 210-6, 210-7, 210-8, 234-5, 234-6, 234-7, 234-10, 729-9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72 (교동)	20180302	20180302	20180302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교동하실골)활용(기존도로명)	
폐지	7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76 (교동)	폐지	20180302	20180302	20180302	건물철거	20090626	지역지명(교동하실골)활용(기존도로명)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90 (교동)	폐지	20180302	20180302	20180302	건물철거	20090626	지역지명(교동하실골)활용(기존도로명)	

문어 포획 제한 고시

제정 2016. 10. 26. 삼척시 고시 제2016-131호

개정 2018. 02. 28. 삼척시 고시 제2018-31호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문어 포획 제한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3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한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삼척시장

1. 삼척시 해역에서 매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연안통발어업의 문어 포획을 금지한다.
2.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수는 척당 1,500개 이상 부설하지 못한다.
3. 통발은 조류 방향과 일직선으로 부설하되 양측 기축에 선명 표시를 의무화 한다.
4. 타 시군 어업인의 전입 및 관내 어업인이 타 시군 어선 매입시 연안통발어업의 채포물 종류에 문어를 제외한다.
※ 기존 관내 어업인의 연안통발 어업 포획물 종류에 문어가 없는 경우 추가하지 못한다.
5. 연안통발 어선이 증톤 할 경우 문어를 삭제한다.
단, 증톤 후 톤수가 3톤 미만이거나, 관내 문어 통발 어선을 매입하여 증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문어통발 어선 1척 폐선)
6. 타 시군 선적 연안통발어선은 관내 해역에서 문어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7. 연안통발 어선은 문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아래의 수역에서 통발 어업을 금지한다.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 무인등대 해역(부표 1)

구분	동 경	북 위	구분	동 경	북 위
가	129도 24분 50초	37도 18분 00초	나	129도 28분 00초	37도 18분 00초
다	129도 24분 50초	37도 13분 00초	라	129도 28분 00초	37도 13분 00초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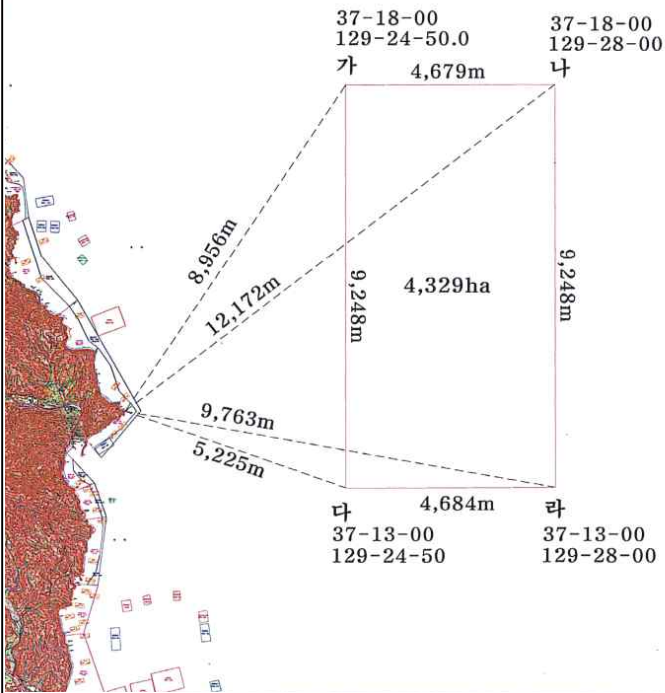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표 1>

연안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육지점 (임원부인등대)
37-13-57.17
129-21-30.43

순위	동 (E) 경	북 (N) 위
가	129-24-50	37-18-00
나	129-28-00	37-18-00
다	129-24-50	37-13-00
라	129-28-00	37-13-00



삼척시 공고 제2018-19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8.02.26. ~ 2018.03.12 (15일간)
3. 말소일자 : 2018.02.26.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남기○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556	
	목조 (1층:34.72㎡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2. 26.

삼척시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건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삼척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2018년도 삼척시 지방재정공시(예산)

우리 삼척시에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의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2018년도 지방재정 운영상황(예산기준)**을 **2018. 2. 28일 부터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시 하였습니다.

- ❑ 공시근거 : 지방재정법 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 ❑ 기준년도 : 2018년도 지방재정 예산기준
- ❑ 공시시기 : 2018. 2. 28일한
- ❑ 공시방법 : 삼척시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열린시정 ➡ 예산정보 ➡ **재정공시**
- ❑ 공시내용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아래 사항
 - ▶ 예산규모 : 세입예산, 세출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 재정운영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 재정운영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및 인센티브현황
- ❑ 문의처 :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033-570-3212)